

다산학 45호 (2024.12) | 125~170

‘敎敎·법法·政政’을 통해 본 응오티념뫼時任 경세론의 특징과 위상

윤석호 | 부산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목차

- 서론
- 경세의 지향: ‘敎敎·법法·政政의 순행順行’
- ‘敎敎’의 방안: 유학 소양의 인재 양성과 선발
- ‘법法’의 방안: 둔전 개간을 통한 민인의 안집
- ‘政政’의 방안: 간소하고 효율적인 집권 통치 체제
- 결론

1. 서론*

조선의 진주에 살던 조완벽趙完璧이라는 사인士人은 전란 중이던 1597년 왜의 포로로 잡혀 교토로 끌려갔다. 그리고는 글자를 안다는 이유로 상인의 무역선에 동승해야 했는데, 일본에서 3만 7천 리나 떨어진 안남국安南國, 바로 베트남이다.

모든 것이 생경했을 그는 익숙해서 놀라운 광경도 목격했다. 바로 문리후文理侯 정초鄭勳라는 권력자의 초청에 응한 자리였다. 자신을 조선인이라 소개하자, 그들은 후대하며 술과 음식을 내어주었고, 왜국이 조선을 침략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측은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을 조완벽에게 건네었는데, 그 속에는 고금의 명작 수백 편이 실려 있었다. ‘조선국朝鮮國 사신使臣 이지봉李芝峰’, 즉 이수광의 시를 제일 위에다 두고서 말이다.¹⁾ 심지어 조완벽은 이들이 ‘우리나라도 예의지국으로 귀국과 체모가 같다.’고 자평했음을 전했다. 또한 독서를 숭상하여 시골 마을에도 왕왕 학당이 있어 글 읽는 소리가 이어졌고, 아이들은 『몽구蒙求』와 『통감절요通鑑節要』의 논論을 암송하거나 더러는 시문을 익혔다고도 했다.²⁾ 이쯤 되면 왜인들이 조완벽을 그 멀고 험한 뱃길에 동승시켰던 의도가 짐작된다.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이들이

* 본 연구는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1) 베트남에 이수광이 알려진 계기는 1597년에 북경을 방문했던 조선과 베트남 사절단의 만남이다. 이때 조선의 사신인 이수광은 베트남의 사신인 풍각코안馮克寬(Phùng Khắc Khoan, 1528-1613)을 만나 15일 여를 교류하며 시문을 주고받았는데, 풍각코안은 귀국한 이후 이수광의 저작을 베트남의 지식인들에게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최병욱, 「이수광의 베트남, 1597~1598」, 『동남아시아연구』 19-3, 2009; 박희병,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47, 2009; 김문식, 「지봉 이수광의 베트남 이해」, 『한국실학연구』 35, 2018.

2) 조완벽에 대한 이상의 서술은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였다. 『芝峯先生集』 卷23, 「雜著」, 〈趙完璧傳〉.

적지 않았던, 더구나 조선 문인에 대해 우호적이던 베트남에서 조완벽은 분명 왜상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조완벽의 사례는 17세기 초의 베트남에서 유학이 몇몇 식자나 관료의 소양 차원이 아닌 체제적 저변의 차원에서 활용되었음³⁾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러했음은 당시 베트남이 마련해 놓았던 전장들에서 확인된다. 명군을 물리친 레라이黎利(Lê Lợi, 1385~1433)는 유학을 국교로 삼아 후레後黎 왕조를 건국했으며, 이후 5대 왕인 타인똥聖宗(Thánh Tông, 1442~1497)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방제도, 중앙관제 등의 체제적 기틀이 유학의 전장을 토대로 정돈되었다.⁴⁾ 특히 토지제도의 경우 건국과 함께 귀족 소유 토지 및 부재지주 토지를 몰수하여 공전화시키고, 이를 녹전祿田과 균전均田 등으로 분배하였다. 당나라 통치를 거치며 시행되었다가 동요되고 있던 균전제를 다시금 확립한 것으로, 이는 동시기 동아시아사에서 유례가 없는, 그래서 베트남 사회경제사에서의 주요한 특징으로 평가된다.⁵⁾

그러나 후레 왕조의 안정은 지속되지 못했다. 1527년에는 막당중莫登庸(Mạc Đăng Dung, 1483~1541)의 찬탈로 잠시 멸망하기도 했으며,

3) 유인선, 「베트남 여조의 성립과 유교이념의 확립: 불교이념에서 유교이념으로」, 『동아연구』 48, 2005; 「유교가 베트남에서 국가이념으로 성립되는 과정」, 『Suvannabhumi』 3-1, 2011; 최복희, 「베트남 儒學思想 形成過程의 特徵 —麗末鮮初 儒學 鼎立過程과의 比較를 통하여」, 『유교사상문화연구』 35, 2009; 김성범, 「베트남의 유학과 연구 현황」, 『오늘의 동양사상』 23, 2012; 윤승연, 「리李 왕조 시기의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와 유교이념」, 『베트남연구』 22-1, 2024.

4) 베트남 전근대의 체제 정비 과정과 주요 제도들의 연혁에 대한 본고의 서술은 다음의 글을 크게 참고하였다. 송정남, 『베트남 역사 읽기』, HUEBOOKs, 2010;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저, 민병희 역, 『잃어버린 근대성들: 중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위험성』, 너머북스, 2012; 유인선,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18; 김성범, 『베트남 사상으로의 초대』, 푸른사상, 2019.

5) 배항섭, 「19세기 조선과 베트남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토지소유를 둘러싼 제도와 관습의 차이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06, 2010.

남·북조의 분립을 극복하여 통일을 이뤄낸 이후로도 전鄭(Trịnh) 가문과 응우옌院(Nguyễn) 가문이 각각 당응와이唐外(Đàng Ngoài)와 당중唐冲(Đàng Trong) 지역의 실권을 장악하여 분리 통치하는 시기가 이어졌다. 이 기간에 국초의 전장에는 점차 균열이 일어났다. 균전으로 분급된 공전公田은 사전화했고, 관료제는 방만해졌으며, 국가 재정은 만성적 부족에 시달렸고, 세제 개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과도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더구나 17세기 이래로 빈발한 재해는 농업 인프라에 큰 타격을 주었고, 생계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을 규합한 도적과 반란군들이 도처에서 봉기하였다.

이처럼 국가 체제의 전면적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에 베트남의 지식인들은 깊이 고민했고 나름의 방안을 내놓았다.⁶⁾ 이들 가운데 응오티념吳時任(Ngô Thi Nhậm, 1746~1803)은 레-쥘 왕조의 말엽과 그 멸망, 농민 반란, 떠이선西山(Tây Sơn) 왕조의 건국과 패망, 응우옌 왕조의 건국 등을 차례로 목도했던 관료이자 사상가였다. 특히 그는 레-쥘 왕조와 떠이선 왕조 모두에 출사하였고, 현실의 복잡다단한 폐단을 예리하게 분석·진단·처방하는 등 경세가經世家로서의 뚜렷한 행보도 걸었다.⁷⁾

6) 응우옌 파이 동, 「18세기 베트남의 경세제민 사상」, 『한국실학연구』 36, 2018.

7) 응오티념에 대해 그간 국내에서는 그의 사회책임사상을 퇴관 이후의 행적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陳彩玉, 「吳時任의社會責任思想」, 『유학연구』 32, 2015), 대청 사행에서의 행적과 자료에 대한 연구(김영죽, 「1790년, 安南 使臣의 중국 使行과 그 意味」, 『대동문화연구』 78, 2012; 「베트남西山朝巨儒吳時任의使行관련 기록 일고」, 『溫知論叢』 74, 2023), 18세기 베트남 경세사상의 추이 하에서 응오티념을 논한 연구(응우옌 파이 동, 위의 글, 2018) 등이 제출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응오티념의 저작과 행적을 개관하는 성과도 있었다.(武小爽, 「吳時任의著述及思想研究」, 鄭州大學教 碩士學位論文, 2021). 특히 『베트남 사상사』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응우옌 타이 트의 저작과, 그 역자이기도 한 김성범의 저서 『베트남 사상으로서의 초대』(푸른사상, 2019)에는 응오티념을 비롯한 베트남의 주요 사상가들의 면모가 해당 시대상과 함께 개관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세에 대한 그의 총체적 시각이다. 즉 그는 ‘교·법·政의 순행順行’을⁸⁾ 경세의 요체로 상정했는데, 이것은 그의 경세론이 개별 사안들에 대한 입론과 함께 이들을 국가 체제로 교직조직해내는 규모 하에서 개진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에 착안한 본고는 ‘교·법·政의 순행’이 그려내는 체제적 함의를 확인하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그가 주요하게 개진했던 경세 인식과 방안을 ‘교·법·政’의 각 부면에서 분석한다.⁹⁾ 그리고 결론에서는 당대의 동아시아에서 다채로운 경세론이 발출되고 있었음에 유의하여, 응오티념의 경세론이 지니는 시대사적·학술사적 특징과 위상을 당시 동아시아 경세론의 지형 속에서 가늠해본다.¹⁰⁾

2. 경세의 지향: ‘교·법·政의 순행順行’

응오티념은 자가 희윤希尹, 호는 달헌達軒으로, 1746년 10월 25일에

8) 『吳時任全集』1권, 「金馬行餘」, 〈芹曝卮言序〉.

9) 본고에서 활용한 응오티념의 저작은 社會科學出版社에서 간행한 『吳時任全集』(Ngô Thi Nhậm toàn tập)(2003, 1권~5권)이다. 베트남 사회과학원 철학원의 르엉 미 번 선생님께서 이를 비롯하여 『歷朝憲章類誌』, 『黎朝詔令善政壹本』, 『大越通史』 등의 자료를 보내 주셨다. 지면을 빌려 그 후의에 깊이 감사드린다.

10) 심사평에서도 지적된 바 응오티념은 『춘추관견春秋管見』이라는 주해서를 저술했을 정도로 『춘추』에 조예가 깊었다. 뿐만 아니라 만년에는 불교에 귀의했을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면모들은 비단 그의 사상의 전모에 접근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경세론의 학적 저변과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서도 함께 조명되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역량의 부족과 지면의 제한으로 미처 담아내지 못하였다. 차후의 연구를 기약하며, 아울러 베트남사 비전공자의 거친 글을 꼼꼼하게 읽고 격려와 질정을 해 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출생했다.¹¹⁾ 희애씨 성의 후예인 그의 가문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세가였다. 증조부인 단악丹岳 선생은 학식과 문장이 전아하였으며, 평생 400여 명의 제자를 길러낸 교육자였다. 부친 응오티씨吳時仕(Ngô Thi Sĩ, 1726~1780)는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요직을 거친 정치가이기도 했다. 1766년의 과거에서 진사進士에 합격했으며, 이후 양산독진諒山督鎮을 거쳐 호부시랑에 올랐다. 사후에는 예부상서에 추증되었고, 경연후慶延侯에 봉해졌다.

응오티님은 11세부터 증조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경전과 역사서, 성리서를 숙독하였다. 유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던 가학의 전통이 어린 그에게 전수된 것이다. 단악공이 세상을 떠난 1760년부터는 부친의 지도를 받았는데, 이때 첫 번째 역사 관련 저술인 『27사촬요二十七史撮要』를 저술하기도 했다. 지학志學의 나이를 지나며 그의 학문적 재능은 점차 도드라졌고, 1762년에 치른 군현의 이고二考에서 우항優項에, 1768년의 향시에서 해원解元에 올랐다.

1769년에 해양헌찰부사海陽憲察副使로 임명되어 레-쥘 왕조에서 처음으로 출사한 그는, 30세가 되던 1775년의 회시에서 3갑甲의 성적으로 동진사에 급제하였다. 이후로 그는 레-쥘 왕조 말엽의 혼란한 정국에서 주요한 관직을 역임했다. 먼저 급제와 함께 호부도급사중戶部都給事中에 제수되었고, 곧이어 한림원 교리에 임명되어 국사 편수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1776년부터는 산남도山南道 감찰어사와 해양도海陽道 향시감고, 경북독동京北督同을 지냈고, 1778에는 겸태원독동행참정兼太原督同行參政을 맡았다. 또한 1779년에는 탁승동각교서擢升東閣校書를 역임했고, 취룡에서 반란을 일으킨 황문동黃文桐을 토벌하는데 기여했다.

11) 응오티님의 생애는 다음의 글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武小爽, 앞의 글, 2021.

진사 급제 이후 순탄한 관로를 건던 그는, 찢 조정의 계승자를 놓고 벌어진 1780년의 이른바 ‘경신사건庚申事件’에 휘말렸다. 당시 찢 조정의 국왕은 찢섬鄭森(Trịnh Sâm, 1739~1782)이었는데, 태후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자인 찢똥鄭棕(Trịnh Tông, 1763~1786)에 대해서도 문文보다 무武를 숭상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그러던 중 총애 하던 선비宣妃 당티후에鄧氏蕙(Đặng Thị Huệ, ?~1784)와의 사이에서 찢간鄭曄(Trịnh Cán, 1775~1782)이 태어났는데, 이에 찢섬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사전 조치로 1780년에 세자를 찢똥에서 찢간으로 교체하고자 했다. 이를 간파한 찢똥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모략을 준비했는데, 시행 전에 계획이 누설되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어린 찢간이 즉위한 지 1달 만에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였다.

이러한 정국 변화와 찢똥의 득세는 응오티념에게는 큰 위협이었다. 찢똥의 반란 의도를 비판하고, 이를 찢삼에게 알린 장본인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이복 동생 찢간을 폐위하고 즉위한 찢똥은 5명을 제외한 관료의 직위와 작위를 모두 인정하겠노라고 선언했는데, 응오티념은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응오티념에 대한 찢똥의 적대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를 잘 알았을 응오티념은 찢간의 화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산남으로 떠났다. 그리고 고달픈 피난 생활은 1786년이 되어서야 끝이 날 수 있었다. 찢똥이 농민 반란으로 세워진 떠이선西山 조정의 침입에 패배하여 끌려갔는데,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도중 자진하면서 그의 통치가 끝이 났기 때문이다.

포의布衣로 레-찢 왕조의 멸망을 목도한 그는, 이어 들어선 떠이선 왕조에서 광중제光中帝(阮文惠)와 경성제景盛帝(阮光纘)로부터 거듭 중

용되었다. 광중제 시절에는 공부시랑, 병부상서, 시랑대학사, 국사서
총재 등을 역임했다. 또한 중흥 레조의 마지막 황제인 소통제의 요청
하에 주둔해있던 청군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웠고, 이후 교섭 문서를 작
성¹²⁾하는 등의 대청 외교에도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성제 시절에는 유년기에 즉위한 국왕을 대신하여 각종 조칙을 직접
작성했으며, 경성제 책봉의 교섭을 위해 대청 사행으로 파견되기도 했
다.¹³⁾

응오티념은 자신과 그의 가문을 키워낸 왕조에서, 또한 이를 멸망시
킨 떠이선 왕조에서도 요직을 거치며 자신의 역량을 펼쳐냈다.¹⁴⁾ 그
러나 떠이선 왕조는 지속되지 못한 채 1802년 멸망하고 말았다. 그리
고 이어 건국된 응우옌 왕조는 응오티념의 이러한 행적을 문제 삼아
하노이의 문묘에서 매질을 가했다. 이때의 고초가 병으로 화한 응오티
념은 결국 이듬해인 1803년 2월 16일에 유명을 달리했다.

일면 영달을 좇던 관료 지식인의 참담한 말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그의 삶에서는 급박한 정세에 치열하게 대응했던 경제의 행보
가 확인된다. 특히 그는 유학에 대한 높은 이해를 지녔으면서도,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폐단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실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면면은 경제와 관련하여 그

12) 그가 작성한 대청 외교 문서는 그의 저작집 중 『방교호화邦交好話』에 수록되어 있다.

13) 이때의 행적과 교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김영죽, 앞의 글, 2012;
앞의 글, 2023.

14) 떠이선 왕조 국성國姓은 원래 호胡였는데, 1771년에 광남국을 정복한 뒤로 그곳의 국성인
‘阮’으로 바꾸었다.

가 남긴 다수의 저작에서 확인되는데,¹⁵⁾ 그중에서 〈근폭치언서芹曝¹⁶⁾ 卮言序〉에는 중앙과 지방, 조정과 현장을 두루 경험하며 온축해온 그의 경세론의 요체가 정돈되어 있다.¹⁷⁾

〈근폭치언서〉의 내용은 경세의 지향에 대한 인식을 담은 전반부와 그에 입각해 현실 경세의 긴요처를 지적한 후반부로 나뉜다. 먼저 전반부에서 그는 하늘과 땅이 만물의 재잘거림을 억누르지 않았으며, 성인이 이러한 도道를 본받아 천하를 다스렸으므로 꼴을 먹이던 자들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행할 수 있는 군주를 모시면서도 이를 알기만 할 뿐 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하로서 불충不忠한 것이고, 조언을 얻기 위해 조정을 세웠으면서도 묵묵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신하로서 불성不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신의 말을 펼쳐내기 위한 완곡한 겸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국가 운영 주체의 핵심적 역량에 대한 그의 이해가 드러나 있다. 즉 군주는 정치적 실천성을 지녀야 하며, 신료는 이를 추동하고 지지하는 역할로서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어지는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피력된다. 그는 다스림의 도道가 ‘의지를 더함(加之意)’에 있다던 동중서董仲舒의 말을 단초로 삼았다. 이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加之意’란, 해가 뜨기 전 옷을

15)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옹오티념의 주요 경세 저작으로는, 레-전 왕조 사환기에 썼던 수 편의 啓와 議, 광중제에게 올리는 進言의 서문으로 추정되는 〈芹曝卮言序〉(『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에 수록되어 있다.), 경성제를 대신해서 썼던 수 편의 詔勅(『吳時任全集』 2권, 「翰閣英華」에 수록되어 있다.) 등이 있다.

16) ‘芹曝’이란 『列子』 「楊朱」의 ‘미나리를 바침(獻芹)’과 ‘햇볕 쬔을 바침(曝日)’을 합친 말이다. 誠意가 지극하나 식견이 모자란 예물이라는 뜻으로, 신하가 군주에게 올리는 忠諫에 대한 겸사이기도 하다.

1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자세히 분석된 바가 있다.(김영죽, 앞의 글, 2023) 본 장은 이를 참고하되, 〈근폭치언서〉가 지니는 경세론적 함의에 초점을 둔다.

입고 해가 진 뒤 저녁을 먹으며 날마다 바빠서 겨를이 없는 것이 아니며, 열리고 닫히는 큰 동요 속에서 제도를 바꾸어 변화시키는 것도 아닌, ‘그 요체를 얻어서 지킴(操得其要)’이라고 했다. 또한 그런 상태에서는 만 가지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고, 움직이지 않아도 조화를 이루며,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고, 작위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리고는 이제삼왕 시절에 의상衣裳을 드리우기만 하거나 팔짱을 끼기만 하여도 천하가 다스려졌다던 말을 인용하면서, 실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加之意’, 즉 요체를 얻어서 지켰던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인식이 무위의 정치에 대한 피상적 동경이 아닌, 실제적인 통치 행위에 대한 강한 지향을 담고 있음은 이어지는 그의 주장에서 확인된다. 그는 ‘지키는 것(操者)’이란 무엇인지를 자문한 뒤, ‘敎·法·政’이라는 삼자를 요체로 한다고 답했다. 또한 삼자가 서로 순응하여 작동하면(順行) 편향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로써 ‘법法’은 ‘敎敎’를 보조하고 ‘교’는 ‘정政’으로 수행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방책이 바로 『서경書經』의 「대우모大禹謨」에 실린 ‘구공九功’과 「홍범洪範」에 실린 ‘구주九疇’라고도 했다. 이어서 그는 어느 시대인들 교·법·정이 없던 때는 없었으나, 또한 각각이 편향되어 함께 펼쳐지지 못했던 까닭에, 모두가 제대로 서지도, 시행되지도, 베풀어지지도 못했음을 질타했다. 요컨대 ‘교·법·정의 상순相順’이 그의 경세론의 요체이자 지향이며, 그것은 유학의 이상적 통치 질서에 근거함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그는 군주가 가늠하고 감당해야 할 일의 규모와 깊이가 대담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군주의 통치가 이에 상응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연쇄적 난맥상을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군주가 그 도道を 얻지 못하면, 이에 취렴聚斂의 ‘政’을 행합니다. 취렴의 ‘政’을 행하면, 이에 탐욕스럽고 비루한 관리들이 나옵니다. 탐욕하고 비루한 관리가 나오면, 이에 올바르게 다스리는 ‘法’은 폐해집니다. 올바르게 다스리는 ‘法’이 폐해지면, 이에 사민四民의 업業이 무너집니다. 사민의 업이 무너지면, 이에 간사하고 쓸모없는 풍속이 성행합니다. 간사하고 쓸모없는 풍속이 성행하면, 이에 도답게 펼쳐지는 ‘敎’가 버려지게 됩니다. 다스리고자 하는 군주가 반드시 통치를 보좌할 신료를 얻어야 하며, 그러한 연후에 ‘敎’, ‘法’, ‘政’이 거행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¹⁸⁾

취렴의 ‘정政’에서 시작되어 ‘교敎’의 실패(斃)에 이르는, 말 그대로 ‘교·법·정’의 비정상적 악순환이다. 원인이 명확한 만큼, 응오티념은 바로 그곳에서 해결 방안을 구했다. 즉 악순환을 순행順行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선결 조건으로서 국왕을 보좌할 신료이다.

논점을 자연스레 당대의 현실로 옮겨 놓은 응오티념은, 이어지는 글의 후반부에서 ‘교·법·정’의 실태를 분석했다. 그는 후레 왕조가 개창된 이래로 체제가 정비되어 화민풍속化民風俗·구현심관求賢審官·부국강병富國強兵 등에서의 요체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의 학자들에 대해서는, ‘敎·法·政’이 이루어진 자취만을 알았을 뿐 그것이 이루어진 근원으로서의 마음은 알지 못했다고 비평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

18) 『吳時任全集』1권, 「金馬行餘」, 〈芹曝卮言序〉. “人君思之不得其道, 於是聚斂之政行焉. 聚斂之政行, 於是貪鄙之吏出焉. 貪鄙之吏出, 於是平治之法廢焉. 平治之法廢, 於是乎四民之業殘焉. 民之業殘, 於是乎姦冗之風熾焉. 姦冗之風熾, 於是乎惇敎之教斃焉. 是故欲治之君, 必得輔治之臣, 然後敎法政可舉.”

실의 '교·법·정'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해 연쇄적 폐단이 양산되었음을 지적했다.

응오티념은 비판의 끝에 역시 '교·법·정'으로부터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교·법·정'이 바로 서면 걱정과 염려 없이도 저절로 올바른 정치가 행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핵심은 현실의 부족한 사정을 구명하여 바로잡는 것에 있으며, 이것이 만세의 정치를 행하는 심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천하와 삼재三才의 일을 처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서경』 「주관」을 필히 알아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성인은 모든 사물에 통달하여 천하를 하나의 집처럼 온 나라를 하나의 사람처럼 다스렸으니, 바로 그 요체를 잘 잡는다면 현실의 '교·법·정'도 널리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과 같이 응오티념은 '교·법·정'을 국가 통치의 골격으로 세우고, 삼자의 '순행'이 이상 시대부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경제의 지향임을 밝혔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유교 경전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와 숙고 하에서 도출되고 있다. 그의 경제론이 일면 무위 속의 조화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폐단을 구명하여 바로잡는 실천적 행위와 제도를 함께 구상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요컨대 그는 유교 경제론의 소양을 폭넓게 수용·이해하면서도, 사회적 쟁탈의 해소와 공생을 위한 체제적이고 실천적인 통치 행위를 '교·법·정의 순행'이라는 지향 속에 담아낸 것이다. 나아가 응오티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현실에 대한 정밀한 비판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그가 제기한 교·법·정을 논점으로 하여 각각 장을 달리해서 살펴본다.

3. ‘敎敎’의 방안: 유학 소양의 인재 양성과 선발

베트남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중국과 더불어 과거제도의 전통을 가진 나라로, 그 연혁을 살피는 것은 ‘교’에 대한 응오티념의 현실 인식과 경세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리李 왕조의 3대 왕인 타인똥聖宗(Thánh Tôn, 재위 1054~1072)은 최초로 문묘를 세우고 사시에 제사를 지냈으며, 문묘 권역 내에 학교를 부설해서 황태자를 비롯한 왕자들과 고관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교육했다. 그를 이은 년똥仁宗(Nhân Tông, 재위 1072~1128)은 1075년에 최초로 과거시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듬해에 국자감을 설립하고, 관료들을 그곳에서 교육했다. 이후 리 왕조에서의 과시는 시행 연한이 길고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탓에 모두 일곱 차례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교 소양의 관료 선발이 객관적 절차를 통해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전陳 왕조와 호胡 왕조를 경과하며 명맥을 이어가던 교육 및 과거제는 후레後黎 왕조 초기에 주요한 발전을 맞이하였다. 먼저 타이또太祖(Thái Tổ, 재위 1428~1433)는 국자감을 정비했고, 평민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수한 자는 국자감과 로학路學¹⁹⁾에 입학할 수 있게 했다. 타이똥太宗은 1434년에는 부정기시인 제과 외에 향시·회시로 구성되는 진사시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1438년에는 진사시 시행 연한을 3년으로 하는 식년시 규정을 만들었다. 1442년에는 이 규정 하에서 처음 회시가 치러져서 33명의 진사가 배출되었다. 또한 타인똥聖宗(재위 1460~1497)은 과사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1467년에는 국

19) 전 왕조의 타인똥은 1243년에 국자감을 증수했고, 1253년에는 국학원을 설립하여 공자와 주공 및 현인 72명의 조상을 모시게 했다. 또한 로에도 관학인 로학을 세웠는데, 이는 이후로 계승되었다.

자감 학관에 오경박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오경을 인쇄하여 국자감의 교재로 활용케 했다. 아울러 1483년에는 태학을 중수했으며, 국자감 학생에게 학습 정도에 따라 녹봉을 지급했다. 그리고 1484년에는 1442년부터의 과시 합격자 명단 및 시험 연도 등을 새긴 ‘진사제명비進士題名碑’를 세웠는데, 이는 1780년에 세워진 마지막 비석에까지 전통으로 이어졌다.

응시 자격에도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평민 이상이면 향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462년에는 수험생에 대한 보증 규정인 ‘보결향시례保結鄉試例’가 시행되었는데, 그 골자는 사장社長은 지역 내 수험생의德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험생의 3대 이력을 공개하며, 응시생은 향시 전에 기초 문학 능력을 평가하는 삼사시를 치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삼대에 불효不孝·불목不睦·불의不義·난윤亂倫·교사敎唆에 해당하는 선조가 있는 자, 창우자倡優者·역당위관逆黨爲官 및 그 자제, 그리고 관직자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자는 향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인재 선발에 있어 윤리 덕목의 실천이 기초적인 자질로 요구된 것이다.

정비된 과거제 하에서 후례 왕조는 26차례의 시험을 시행했고 988명의 진사를 배출했다. 특히 타인똥聖宗은 38년의 재위 기간 동안 12차례의 회시를 통해 501명의 진사를 선발했는데, 이는 중앙 및 지방 행정조직을 정비하면서 기왕의 대신 및 대장군을 과거 출신의 신진 문관으로 대체하려던 의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후례 왕조의 교육 및 과거제는 남북조 시대에 차별적인 계승을 거쳤다. 북부에 거점을 둔 막왕조는 과거 및 교육제의 유산을 직접적으로 물려받아 시행했다. 특히 식년시를 준수하여 65년의 존립 기간 동안 22차례의 회시를 실시하고 485명의 진사를 선발했다. 이와 달리 종래의 중

심지로부터 벗어난 남쪽을 거점으로 한 남조가 과거제의 계승에 어려움을 겪었다.²⁰⁾

남북조시대를 끝내고 후레가 중흥했으나, 독립된 두 조정에 의해 내치가 분리되었다. 링강靈江 북쪽인 당 응와이 지역은 찐주鄭主가 장악해 황제-조정의 권한을 압도했고, 남쪽인 당쥬 지역은 응우옌주阮主가 독립 정부를 구성해 통치한 것이다.²¹⁾

찐주는 막莫 왕조와의 항전과 응우옌주와의 대립 등으로 인해 통치 기반을 무武에 의존했는데, 이는 찐조가 후레의 과시를 이어받았음에도 한동안 그 규정을 잘 지키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1580년이 되어서야 재개된 찐주의 과시는 1787년까지 80차례 시행되어 851명의 진사를 배출했는데, 후레 초기 만큼 규정이 준수되지 못했다. 특히 공전의 축소와 사전의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의 축소는 관직 체제의 축소뿐만 아니라 과거제 시행상의 폐단을 낳았다. 향시의 거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주똥 때에 응시자로부터 ‘명경전明經錢’이라는 명목으로 5백陌을 거두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명경전 납부 대상자는 향시 응시자 선발 과정인 고핵考覈에 합격한 ‘거지舉知’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1750년부터는 직업과 신분에 관계없이 3관貫을 납부하는 자에게 향시를 볼 수 있게 하는 규례가 시행되었다.²²⁾ 말하자면 향시 응시자를 선발하는 절차 및 향시의 본래 취지가 형해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

20) 송정남, 「베트남 北南朝의 科試 一考察」, 『동남아연구』 25-2, 2015.

21) 중흥 레조의 황제 예하에 있었던 까닭에 찐주의 통치자에게는 황제의 책봉을 통한 왕호가 부여되었다. 한편 응우옌 왕조의 통치자에게는 황제의 책봉을 통한 공호가 부여되었는데, 조공이 끝나는 1620년부터는 황제의 책봉이 아닌 스스로 계승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1744년부터는 기왕에 황제로부터 받았던 공호를 대신하여 자칭 ‘武王’이라는 왕호를 쓰기도 했다.

22) 명경전의 명칭은 명왕明王 정조아잉鄭楹에 의해 ‘통경전通經錢’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그의 왕호王號인 ‘明’자를 회피한 것이다.

해 향시에서는 혼잡함에 따른 부상과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답안 작성 및 채점에서의 비리에서부터 대리 응시자의 고용에 이르는 각종 부정이 만연하게 되었다.²³⁾

과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당종의 응우옌주는 과시 시행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²⁴⁾ 이에 초기에는 타잉호아淸化의 응우옌씨 본가나 본향 인물의 천거, 음서, 매관매직을 통해 관직자를 충원했다. 과시는 1646년에 이르러 시행되었고, 1740년에는 4기에 걸친 단계적 절차로 정비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 연한이 식년시에 비해 긴 9년·5년이었고, 당시 만연한 과시 외의 관료 선발 관행으로 인해 제때에 시행되지도 못했다. 일례로 1725년에는 장신은 50관, 사장은 45관을 납부하면 관직을 주는 매관매직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에 많게는 16~17명의 장신과 20명 이상의 사장이 있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상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교육 및 과거제도는 유교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세기 후반에 도입되었으며, 후레 초의 주요한 시책들을 통해 정교화되었다. 그러나 남북조시대와 레 중흥기의 남북 분열을 거치며 점차 쇠퇴하여, 18세기 중반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었다.

응오티념은 중앙과 지방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은거 시절에는 격동의 시기를 비판적으로 목도했던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당시 교육 및 과거제의 난맥상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면모는 그의 저술 <교의敎議>²⁵⁾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송정남, 「베트남 당종의 政治와 科試 一考察」, 『동남아연구』 26-3, 2017.

24) 송정남, 「베트남 당응와이의 科試 一考察」, 『동남아연구』 27-2, 2017.

25)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敎議>.

모두에서 그는 교화와 풍속을 각각 국가의 급무이고 천하의 대사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향학, 국학, 교조敎條, 학규 등과 같이 그간 설립·제정되어온 교육 기관과 제도의 역사를 되짚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화는 지체되고 순풍은 저해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교육이 문文에 치중되어 정작 行行을 교육하는데 소홀했음에 있다고 진단했다.

실천성을 다분히 머금고 있는 그의 교화관은 현실 정치의 관행에 대한 비판에서도 묻어난다. 가령 조정에서 한 관원을 임명하고자 하면 이내 관료들은 “저 사람은 뇌물을 받았고, 저 사람은 뒤로 누구와 결탁하였습니다.”라며 반대하는데, 응오티념이 보기에는 스스로도 품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다만 속인의 소문에 근거하여 현혹시키는 행태에 불과했다. 또한 묘당에서 명령을 내리고자 해도 관료들은 “이 일은 옳지 않고, 저 일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라며 반대하는데, 이 역시 그가 보기에는 경륜을 갖추지 못한 자가 다만 우매한 백성의 마음을 선동하여 웅변하는 것이었다.

응오티념은 이처럼 자질과 실천성을 갖추지 못한 관료를 송유宋儒가 말한 ‘거짓으로 유관을 쓰고 책을 끼고 있는 자(假儒冠 而挾策者)’에 비유했다. 그러고는 이들을 ‘늑을 훔칠 요행을 바라니 용관冗官’이며, ‘분경奔競하여 남에게 의지하니 용역冗役’이며, ‘하는 일이 없으니 조사刁唆’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그 패습이 아래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이를 본받아 이서들은 간활해졌고, 백성들은 완사頑詐해졌으며, 법은 구제하지 못하고, 형刑은 금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요컨대 무능과 허위, 부도덕의 관료 집단이 국가 운영의 전반에 해악을 끼쳤다고 본 것이다.

날카롭고 전폭적인 현실 비판은 교화를 소홀할 수 없다는 강변이기

도 했다. 그 대안을 교화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먼저 참된 교화의 선례로서 유교의 이상 시대를 호출했다. 그는 요순에 주목했는데, 비단 文文으로 뿐만 아니라 行行으로도 가르쳤고, 비단 行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行의자行誼者를 표창했으며, 이로써 사士를 권면하고 요박한 자를 파출해 징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부합하는 사례로서의 두 인물을 베트남의 역사에서 떠올렸다. 바로 전 왕조에서의 쭈반안朱文安(Chu Văn An, 1292~1370)과 후레 중흥조에서의 부이시띠엠裴士暹(Bùi Sĩ Tiêm, 1690~1733)이다. 쭈반안은 국자감 사업司業을 맡았을 정도로 학식이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품을 지녔던 인물이다. 특히 주똥裕宗(Dụ Tông)이 정사에 소홀한 틈에 권귀들이 불법을 자행했는데, 이를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7인의 영신佞臣을 참하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고는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다.²⁶⁾ 한편 부이시띠엠은 후레 중흥조 유종 11년인 1715년에 진사로 합격한²⁷⁾ 인재로, 응오티념과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인데,²⁸⁾ 간언을 하다가 조정에서 파출되었다. 이처럼 두 인물은 역경에

26) 『大越史記全書』本紀 卷7, 藝宗 원년 11월 26일. “國子監司業朱安卒. 贈文貞公, 賜從祀文廟. 安清潭人性剛介. 清脩苦節, 不求利達. 居家讀書, 學業精醇. 名聞遠近, 弟子盈門, 躡青雲登政府者往往有之, 如范師孟黎伯适已為行遣, 亦各執子弟禮, 時來問候, 拜床下, 得與談話片言而去者甚以為喜. 有不善者, 切責唾罵, 甚至呵叱不納. 其清直嚴毅凜烈可畏如此. 明宗徵拜國子監司業授太子經. 裕宗逸豫怠于政權, 臣多不法, 安諫不聽, 乃上疏乞斬佞臣七人, 皆權幸者, 時人號七斬疏. 疏入不報, 遂掛冠歸田里, 愛至靈山, 往居之, 大朝會則赴闕. 裕宗委以政事, 辭不拜. 憲慈太皇太后曰, ‘彼乃不得而臣之人, 我安得而使之耶.’ 帝遣內臣賫衣服賜之, 拜謝畢輒以與人, 天下高之. 至是裕宗崩, 國統將絕, 聞群臣迎立帝, 乃大喜, 杖策上謁, 旋乞還鄉, 辭不受封, 拜厚禮送還. 未幾, 壽終于家. 命官諡祭贈諡, 尋有從祀之命.”

27) 『大越史記全書』續編 卷5, 裕宗 11년 2월.

28) 응오티념은 현종 28년에 태원독동에 재직하던 때에 배사점의 진언을 인용하여 황제에게 간언을 했던 바도 있다. (『大越史記全書』續編 卷5, 顯宗 28년 2월)

겪었으나 이후 학식과 품행이 높게 평가되었다. 쭈반안은 문묘에 배향 되었으며, 부이시띠엠은 귀향하여 가르친 제자들이 명망있는 관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관직이 내려졌던 것이다. 응오티념에 게 두 인물의 이와 같은 이력은 ‘비단 행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행 의자行誼者를 표창해 사士를 권면’했던 요순의 치적에 부합하는 사례였 다. 이에 그는 쭈반안이 문묘에 배향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부이시띠엠 과 같이 존망받는 인물을 문묘에 배향하고 이로써 리학理學의 빛을 넓 게 비추어 천하 대부를 근면케 하기를 소망했다.

나아가 〈교의敎議〉에서 그는 교육 및 과거제의 정상화를 위한 처방도 제시했다. 국학의 경우, 그는 현재의 교관이 다중한 임무로 교육에 몰두 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유생 가운데 온화하고 강직한 사람을 교 관으로 선발하고, 충분한 경제적 대우와 함께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높 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학 생도의 경우에는 경사經史의 학습과 덕 성의 함양을 우선해야 하며, 학업에 소홀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예의 가 없는 경우에는 체벌과 평점 등을 통해 계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향학의 경우 지역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 2인을 선발하여 학관으로 삼 고, 이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교육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한 5년마다 마을 사람들의 행실을 평가 및 상벌하여 교화된 풍속이 향 춘에 자리잡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처럼 교육이 널리 시행되고 풍속이 돈후해지면 당우삼대唐虞三代의 번영을 오늘날에 다시 볼 수 있 을 것이라 전망했다.

응오티념의 교육 및 과거제 개혁안은 〈교목敎目〉²⁹⁾에서 보다 구체적 으로 개진되고 있다. 특히 그는 통경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가 본

29) 『吳時任全集』1권, 「金馬行餘」, 〈敎目〉.

현실은 대리 응시자를 세워 옛 글들을 몰래 베껴서 제출하니 글자를 아는 자가 드물며, 합격 여부도 공정하게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향시 응시자 선발에서의 우수자인 초통이 자질이 없는 자와 섞여 향시를 치르기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시범을 두고 그는 쓸모없는(冗) 것이라 일갈했다.³⁰⁾

향시의 폐단이 그러하다 해도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외면하고서는 이를 타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응오티념은 중국의 ‘연납捐納’을 모델로 한 향시 개혁안을 제시했다. 연납은 돈이나 곡식을 납부하고 국자감생이나 관직을 얻는 방법으로, 명대 이후로 확대되었다.³¹⁾ 응오티념은 이를 참작하여, 응시자 모두에게 통경전을 부과하는 현행의 제도 대신에 60관을 납부한 자에게 상생庠生의 자격을 주고 이들 중에서 향시 응시자를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향학에서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면세 혜택과 의복상의 차별을 두자고 하여, 상생이 자타가 공인하는 향촌 지식인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유했다.

『한각영화翰閣英華』에 실린 〈입학조立學詔〉와 〈시사조試士詔〉도³²⁾ 교육 및 과거제에 대한 응오티념의 경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이다. 조칙은 임금이 내린 명을 적은 문서인데, 그는 어린 경성제를 대신하여 조칙을 직접 작성했고 그중 15편이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왕의 입을 빌려 쓴 이들 조칙에는 응오티념이 국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정황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그의 인식이 담겨 있다.

30)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教目〉. “試法所銅通經士人者, 率皆借人代試, 暗寫舊文, 其實知字者少, 巧作形跡者, 不泥舊文, 好餽有跡便中, 取舍非出於公, 其少有文字, 不預稍通者, 混入三區送考, 多有連試不中, 而試法冗矣.”

31) 연납의 연원과 명대 이후의 확대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徐仁範, 「명 중기 捐納入監에 대하여」, 『역사학보』 185, 2005.

32) 『吳時任全集』 2권, 「翰閣英華」에 실려 있다.

〈입학조〉³³⁾에서 그는 “나라를 세우는 것은 교학을 우선으로 삼고, 치법을 구하는 것은 인재를 급무로 삼는다.”라며 교육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선언했다. 그러고는 학정學政과 과법科法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인재가 점점 부족해지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지금은 ‘일치일난一治一亂’의 순환하는 이치로 보면 난세를 뒤이은 시기로, 교화를 세우고 과거를 설행해서 어지러움을 바꾸어 다스림을 이루어야 할 과제가 두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지는 조칙의 내용은 기왕의 교육 및 과거제를 일신하는 것이었다. 골자를 소개하면, 향촌의 말단 조직인 사社에 사학을 설치하고 사내의 유사 가운데 학행이 있는 자를 두어 사인을 강유한다. 또한 그 상위인 부府에도 부학을 설치하고 훈도관을 파견하여 교육한다. 또한 향시를 시행하여 우등한 자는 국학으로 보내고 차등인 자는 부학으로 보내어 강학을 돕게 하는데, 지난 조정의 향공鄉貢 중에서 직임을 받지 못한 자를 훈도나 지현의 직으로 차임한다. 구래의 유생과 생도들도 모두 시험을 치르게 하여 뛰어난 자는 선발하되 열등한 자는 사학으로 돌려보낸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들의 경우 모두 민으로 속하게 하여 요역을 부담토록 한다.³⁴⁾ 비록 〈교의〉나 〈교목〉의 처방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학·부학·국학으로 이어지는 연계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교육과 과거를 연계한 유학 소양의 인재 양성 및 선발 체제의 재정

33) 『吳時任全集』 2권, 「翰閣英華」, 〈立學詔〉.

34) 이러한 기조는 〈試士詔〉(『吳時任全集』 2권, 「翰閣英華」, 〈試士詔〉)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과거제 설행이 현능한 자를 선발하기 위함임을 지적하며, 그간 향시와 회시가 시행된 지 오래며 효과도 역력했고 선대 조정에서도 이를 이어받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제도가 초창기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품식品式이 상세하지 않은 등의 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立學詔〉에서와 유사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립을 조칙으로 선언한 것이다.³⁵⁾

4. ‘법法’의 방안: 둔전 개간을 통한 민인의 안집

전근대 베트남의 사회경제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균전제의 전통으로,³⁶⁾ 이 제도는 후레 왕조가 건국된 이듬해인 1429년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민四民 모두에게 공전이 지급되는데, 사회적 신분과 관직의 고하에 따라 분급 면적에 차등이 있었으며, 녹전을 받는 종 4품 이상의 관리는 촌락의 공전 지급에서 제외되었다. 1477년에는 6년마다 5품 이하의 관리를 포함한 촌락의 모든 구성원에게 차등 지급하는 등의 수전자 조정이 있었고, 이들에게 지세와 부역 및 병역을 부과하는 등의 의무 규정도 정비되었다.³⁷⁾

이처럼 균전제 하에서는 공전이라 불리는 국가소유지를 민인에서부터 관료에 이르기까지 차등으로 지급했고, 이를 통해 사민은 향산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공전 수급자들은 조세와 역을 부담했고, 이를 통해 국가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요컨대 균전제와 공전은 후레 왕조에서 국가와 민생을 지지하는 물적 토대의 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응오티념 당시 베트남의 사회·경제는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특히 공전의 사전화 및 황폐화로 인해 균전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

35) 과거제의 정상화 외에도 응오티념은 천거제를 통한 인재 등용도 제안했다. 이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本屬臺官陳言(甲體)〉.

36) 배향섭, 앞의 글, 2010.

37) 후레 초기의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송정남, 「15세기 후레 왕조의 사전의 발전과 규정」, 『동남아연구』 10; 『베트남 역사 읽기』, HUEBOOKs, 2010, 184-186 쪽.

지 못했다. 이에 민인은 지주에게 투탁하거나 사전을 경작하는 전호로 전락했고, 그만큼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이어졌다. 이에 18세기 초에는 조·용·조를 시행하여 대민·대농지 수취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현실의 강고한 폐습을 뚫고 효과를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당시의 베트남에서는 민생과 국가의 상생을 지지할 건강한 제도의 마련이 급무였던 것이다.

이것이 응오티념이 가장 고심했던 지점이기도 했다. ‘법法’이 폐해지니 ‘사민四民의 업業’이 무너졌다던 그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급박한 현실 하에서 그가 입각했던 ‘법’이란 민인의 생업과 관련한 기초적 법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민생과 재정의 재건을 위한 비판과 제안의 글을 다수 저술했는데, 그 중심에는 토지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먼저 살펴볼 글은 해양헌찰부사海陽憲察副使로 재직하던 그가 1770년에 올린 <조진해양처정폐계條陳海陽處情弊啓>이다. 여기에서 그는 정수丁數가 줄어드는 것이 결국은 농지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³⁸⁾ 이는 정확한 분석이라 생각되는데, 균전제를 통해 공전을 분급받은 자들이 국가 수취의 대상인 정丁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아한 지점도 있는데, 수백 년 동안의 실효적이고 실제적인 전통을 지닌 균전제가 어떤 이유와 경과로 와해되었는가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하는데, 하나는 농지에 대한 중앙의 관리 태만이다. 응오티념에 따르면,³⁹⁾ 당응와이唐外 및 당하오唐豪의 여러 지역에는 면적이 10,000경頃이나 되는 평원임에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

38)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條陳海陽處情弊啓〉.

39)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글을 근거로 서술했다.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條陳海陽處情弊啓〉.

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예전 청평靑平 시절에 봉차관奉差官을 보내어 농사를 권장하기도 했지만, 그로부터 200년이나 지나는 지금까지 다른 조치가 없었던 까닭에 농지의 60~70% 정도만 경작되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이들 지역은 토질이 좋고 용수가 가까워 농사에 알맞음에도, 관개가 부실하여 토지에 산성이 생기거나 제방이 허물어져 염수가 범람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⁴⁰⁾ 실제로 홍강과 그 지류들은 17~18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범람했다. 예컨대 1713년에는 썸떠이와 썸썸 지역의 홍강 제방과 타잉호아 지역의 주강 및 마강 제방이 무너져서 인근의 13개 현이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1729년에는 홍강의 제방이 붕괴되어 박녕北寧과 흥옌興安 등의 지역이 침수되었는데, 같은 상황이 이듬해에도 반복되어 결국은 9개 현이 실경失耕하기에 이르렀다.⁴¹⁾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세금의 면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구가 줄어들어, 부역을 담당할 인구가 13,500명에서 당시는 9,800명이 되었다. 그의 말대로 인구의 감소의 원인이 시간이 아닌, 관리 부실로 인한 농지 면적의 축소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30년대 후반 이후로 빈발했던 반란과 농민항쟁도 국가의 농지 관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해양헌찰부사로서 그가 1771년에 올렸던 계문인 〈본처세계조진계本處歲季條陳啓〉에 따르면, 1740년 전후로 도적들이 위법을 일삼았고 농지가 버려졌다. 이후 권농책이 시행되어 개간이 이루어졌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떠이선西山 농민항쟁을 경과하면서 상당 부분이 은루隱漏되었고, 관개시설이 희박한 지역은 진폐하여 무성한 숲이 되는 지경이었다. 그리고 이러

40)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條陳海陽處情弊啓〉.

41) 송정남, 앞의 책, 2010, 225쪽.

한 상황은 전정에 있어 근래에 양산된 가장 일반적인 폐단이였다.⁴²⁾ 요컨대 중앙이 경작지의 파악·개간·관개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그래서 응오티념의 말처럼 사람의 공력이 충분치 못함에 기인한 재앙(咎)이지 지력에 핑계를 댈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⁴³⁾

공전이 와해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공전의 사전화이다. 후래 왕조의 농지를 소유권의 귀속처로 구분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균전제의 토대였던 공전 즉 국가 소유지가,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소유했던 사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양자의 비율과 규모를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15세기의 공전은 사전賜田과 녹전祿田, 그리고 백성에게 분급되는 균전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16세기 이후로는 사전이 확대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그 요인으로서는 왕가인 레씨가 지주였다는 점, 개별적으로 둔전을 개발하여 사전화했다는 점, 사전을 국가 재정체계 하에서 충실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이 공전과는 별개로 규모를 늘린 사전이라면, 문제는 공전을 잠식하여 전환된 사전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전賜田과 녹전이 그러하다. 이들은 왕조에 사환한 신료나 공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었다. 그리고 주로 공전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유효한 이상 사전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웠다. 더러는 공전이 아닌 황지荒地가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 경우에도 대체로 기왕의 경작권이나 소유권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을 침탈할 우려도 극히 드물었다.

42)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本處歲季條陳啓〉.

43)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條陳海陽處情弊啓〉.

하지만 15세기 말 이래 왕권이 약화되는 등의 배경 속에서, 이들 공전은 권력과 불법의 간계 하에서 점차 사전화하였다.⁴⁴⁾ 옹오티념이 약속한 추이에 따르면, 백성을 초집하여 권무하던 초기에는 가호에 실호實戶와 객호客戶의 구분이 없었으며, 각각에게 농지를 지급하여 서로의 지해 살도록 했고, 이로써 향촌의 재건을 도모했다. 그런데 큰 전란이 없는 평화가 오래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지를 다투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 과정에서 힘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 대거 호가와 거족에 차염借欠하였는데, 그 방식은 원지와 전토를 전매轉賣하거나, 사노 혹은 가자假子로 투탁하는 것이었다.⁴⁵⁾

이러한 양상은 그가 왕명으로 각도 연읍沿邑과 산읍山邑의 사민社民을 조사했을 때에도 목격되었다. 그의 술회에 따르면, 각처에의 황폐된 농지 가운데 경작되는 곳은 10에 4~5에 불과하였으며, 이로써 삶의 터전을 잃은 태반의 백성들은 유망해 버리거나, 농지를 권세가에게 팔고서는 전호로 전락했다.⁴⁶⁾ 요컨대 백성의 안집과 향산을 위해 균전제 하에서 공전을 지급했으나, 국가의 관리 소홀과 재해 등으로 인해 공전에서 경작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리고 생계의 위협에 노출된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거나 타지로 유입되어 客戶가 되었고, 국가 재정은 호가와 거족에 의해 사전과 예속인으로 잠식된 공전과 호구만큼 축소되었다.

현실의 폐단을 이처럼 정밀하게 파악한 그는, 전정에 대한 칙령을 내려 민생을 돈후하게 하는 것을 급무로 삼았다.⁴⁷⁾ 나아가 이를 위한 방

44) 송정남, 앞의 글, 2001.

45)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條陳海陽處情弊啓〉.

46)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代滾郡公草屯田事宜啓〉.

47)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條陳海陽處情弊啓〉.

안으로서 국가 주도의 ‘개간’을 제시했다. 그 틀은 1771년의 계문인 〈본처세계조진계本處歲季條陳啓〉에 제시되어 있는데, 대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봉차관을 파견하여 사社마다 누락된 농지를 조사해 모두 관전에 속하게 한다. 황폐한 농지가 수천 묘畝에 달할 경우,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다면 둔전의 법을 시행하여 관리로 하여금 사람을 모집해서 개간 및 경작하게 한다. 묵시는 농지가 완성될 때를 기다렸다가 수세해야 하는데, 이는 농민들이 중도에 둔전 개간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특히 바닷물이 범람한 땅을 둔전으로 만드는 경우, 토성이 산악酸惡하니 반드시 수시로 관개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농지가 날로 늘어나게 된다.⁴⁸⁾

옹오티념은 〈본속대간진언本屬臺官陳言〉(乙體)에서 개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개진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개간이 가능한 농지의 실수를 파악한 뒤 관원을 파견하여 개간을 관리케 한다. 이때 해당 지역의 부민들을 효유하여 소나 농기구 등을 각출토록 해서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 많고 적음에 따라 관에서는 이들에게 직품職品을 수여한다.⁴⁹⁾ 이로써 농지가 개간되면 절반은 관으로 귀속하여 공전으로 삼고 나머지 절반은 사전으로 지급하며, 그러고는 3년이 지난 뒤에 차관을 파견하여 작황 등을 조사해 부세를 부과한다. 이로써 부자는 재산을 보태어 경작을 도우니 관에서는 비용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

48)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本處歲季條陳啓〉.

49) 옹오티념은 〈대곤군공초둔전사의계代滾郡公草屯田事宜啓〉에서 둔전 개간에 있어 당시 시행하던 보상의 법은 호민들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정치적 보상(출력의 다소에 따른 품직 수여)과 경제적 보상(개간 농지 절반의 사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代滾郡公草屯田事宜啓〉).

며, 빈자는 힘을 보태어 배를 채우니 흠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된다.⁵⁰⁾

이처럼 응오티념은 현금에서 가장 긴요한 ‘법法’은 사민의 생업에 관한 것으로,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토지제도로 보았다. 그리고 농민의 생업을 지지할 근본적이면서도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개간을 제시했는데, 그 요체는 관이 개간의 주체가 되어 호가를 포섭하는 것, 둔전 개간에 참여한 호가에게 그 정도에 따라 관직과 사전賜田을 지급하는 것, 이로써 마련된 공전을 민인에게 균전으로 분급하는 것에 있다. 음성적으로 만연하던 개간 및 사전私田 확대를 공적으로 전환하는데 핵심을 둔 것으로, 향촌에 밀착했던 그의 경험과 분석이 바탕이 된 획기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정政’의 방안: 간소하고 효율적인 집권 통치 체제

‘敎敎’가 사람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것이라면, ‘정政’은 이들을 배치하여 만들어낸 통치 시스템이다. 응오티념은 현실의 ‘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면모는 그가 어사대 재직 시절 올린 계문인 〈어사대본당관세계진언계御史臺本堂官歲季陳言啓〉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이 듣기로 “관이 많으면 백성이 시끄럽고 기강이 간소하면 백성이 부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서경』 「주관」에서

50)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本屬臺官陳言〉(乙體).

는 “관은 갖추어질 필요가 없다.(官不必備)”⁵¹⁾라고 하였고, 「입정」에서는 “법에는 신중히 행해야 할 바가 있으니, 조례로써 중간의 벌을 시행해야 한다.”⁵²⁾라고 하였으니, 대개 정서政書와 민령民令이 관계된 바는 작은 틈이 천리의 차이를 있게 합니다. 근래 인순이 오래도록 쌓이고 쓸모없는 번잡함(繁冗)이 점차 스며들었습니다(浸漸). 관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설치되었고, 일에는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 늘어났으며, 송사에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자면 직사에 관계된다며 소란스럽게 찾고 문법文法에 관계된다며 사사로이 행하여서, 백성의 고향을 짜내는 관원이 많아지고 국체를 어지럽게 하는 송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⁵³⁾

여기에는 정치 체제에 대한 응오티념의 특징적인 두 가지의 인식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통치 체제의 간소함과 효율성에 대한 지향이다. 응오티념은 불필요한 관행이 그간에 누적되어 관부(관직), 일의 절차, 소송 등의 전반이 비대해지고 번잡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그러한 폐단이 고스란히 백성들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고 비판했다.

사실 베트남의 관직 체제는 후에 초의 유교적 집권화 과정을 통해 크

51) 『書經』, 「主官」. “立太師·太傅·太保, 茲惟三公, 論道經邦, 燮理陰陽. 官不必備, 惟其人.”

52) 『書經』, 「立政」. “周公若曰太史, 司寇蘇公, 式敬爾由獄, 以長我王國, 茲式有愼, 以列用中罰.”

53) 『吳時任全集』 1권, 「金馬行餘」, 〈御史臺本堂官歲季陳言啓〉. “臣聞, ‘官多則民擾, 綱疏則民富.’ 故周官曰, ‘官不必備.’, 立政曰, ‘式有愼以列中罰.’ 凡皆政書民命所保, 豪厘之案, 便有千里之差. 近來因循積久, 繁冗浸漸, 官有不得設而設, 事有不得增而增, 訟情有不得給而論. 大要緣職事以擾索, 借文法以行私, 使民膏罄其員多, 政體虧其訟濫.”

게 정비되었다.⁵⁴⁾ 먼저 중앙의 경우, 레응이전黎宜民(Lê Nghi Dân, 재위 1459~1460)은 기왕의 이부와 예부에 호부, 병부, 형부, 공부 등 4부를 더해 6부 체제를 마련했다. 그리고 중서과, 해과, 동과, 서과, 남과, 북과로 구성된 6과를 두었으며, 6부 관리의 감독이라는 6과의 본래 기능에 지방 관리의 감독까지를 더하였다.⁵⁵⁾ 또한 레타인똥黎聖宗(재위 1460~1497)은 대리시, 태상시, 광록시, 태복시, 홍로시, 상보시 등 6시署를 설치하여 6부의 업무를 돕게 했다.

지방의 경우, 1426년 레 러이는 전국을 4도道로 나누고 관리를 임명했고, 이듬해에는 한림원과 4도의 관리로 515명을 충원했다. 1428년 타이또黎太祖(재위 1428~1433)로 즉위한 직후로는 전국을 5도로 개편하고, 도의 수장으로 민정과 사법을 담당하는 행견行遣을 두었다. 아울러 도예하에는 진鎭, 로路, 부府, 주主, 현縣, 사社를 편제하고, 각각에 관료를 파견했다.⁵⁶⁾ 한편 1466년 레타인똥은 전국을 12개의 승선으로 개편하고, 중간 행정 단위였던 진과 로를 없앴다. 그리고 행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를 없애는 대신 도사都司, 승사承司, 헌사憲司를 두어 각각에게 치안, 행정, 감찰을 맡겼다. 또한 무관으로 임명되던 지방 기관의 수장을 문관으로 교체했으며, 승선마다 감찰어사, 하제관, 권농관 등을 별도로 두기도 했다. 1471년에는 점성으로부터 새로이 확

54) 이하 베트남의 관직 체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유인선, 앞의 글, 2005; 송정남, 앞의 책, 2010, 177~180쪽.

55) 이는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그가 옛 관료들의 반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이해된다.

56) 진에는 진무사와 선위사를, 로에는 안무사와 총관과 동지를, 부에는 지부와 동지부를, 현에는 전운사를, 주에는 방어사와 초토사를 수장으로 두었다. 한편 소수 종족의 거류 지역에는 추장들 중에서 선발한 知州를 두었다. 그리고 최하 행정단위인 社는 民丁을 기준으로 10명, 50명, 100명 등의 단위로 묶어서 소사, 중사, 대사로 했으며, 각각에는 1명, 2명, 3명의 사관을 두었다.

보한 지역에 꾸양남 승선과 타인화 위를 두어 전국을 13승선으로 확대했다.⁵⁷⁾ 그리고 1490년에는 그간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촌락 구성의 단위를 명名에서 호戶로 바꾸었다.⁵⁸⁾

후레 초기에 경향京鄕에 걸쳐 정비된 집권적인 통치 체제는 남북조시기와 중흥후레 왕조에서의 남북 분열을 거치며 점차 와해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바 전주에 통치 기반을 무武에 의존했다. 중앙 관직에 무관의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문관으로 임명되던 진사鎭司, 이전의 都司의 수장을 다시 무관으로 임명했으며, 그에게 승사나 헌사보다 강한 권력을 부여했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주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후레 왕조의 관료 조직은 이원화되었다. 조정은 형식화되었고, 대신 전주의 주부가 공신들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실권을 장악한 것이다. 더구나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요직은 전주의 친족이나 신복들에게 돌아갔다. 또한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현능한 인재의 사로가 막혔고, 그 자리를 불필요한 관직과 관원이 채우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은 응우옌주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전주와는 상이한 관료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후레왕조 전체의 관료 체계를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상의 난맥상은 응오티념이 계문에서 지적했던 실태와 흡사하다. 즉 응오티념은 관료 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의 폐단이 체계성과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의 결여에 기인함을 목도했고, 이를 간소하고 효율적인 집권 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이다.

57) 지방 최고의 행정 단위 명칭인 승선은 홍튀洪順 때부터 '진鎭'으로 바뀌었고, 이는 1831년까지 사용되었다.

58) 이에 상응하여 사의 등급 기준도 바뀌었는데, 대사를 500호 이상, 중사를 300호 이상, 소사를 100호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호구가 늘어난 만큼 사장社長의 수를 대사 5명, 중사 4명, 소사 2명으로 확대했으며, 친인척들이 동시에 같은 사의 사장이 될 수 없게 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주대 통치 체제에 대한 응오티념의 독법이다. 응오티념은 자신의 입론을 지지하기 위해 『서경』 〈주관〉의 “관은 갖추어질 필요가 없다.(官不必備)”는 구절을 인용했다. 그리고 간소한 통치 체제가 유학의 이상 시대에 근원함을 주장했다. 그런데 해당 경전 구절의 맥락을 되짚어보면, ‘不必備’의 대상이 되는 ‘官’은 관직 체계 전체가 아닌 최고위직인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의 삼공에 해당하며, 경의의 초점은 ‘관직(관원)의 축소’보다는 ‘오직 그 인물을 보아야 한다(惟其人)’는 것에 두어져 있다. 말하자면 경문의 주지는 ‘작은 정부’보다는 해당 직책에 부합할 ‘현능한 인물의 등용’에 두어져 있는 것이다.

여타의 경전에서도 삼대의 정치 체제는 응오티념과는 다소 다른 맥락과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예기』 「문왕세자」를 보면, “옛 기록에 말하기를 ‘우·하·상·주에 사師·보保·의疑·승丞이 있었으니, 4보輔 및 3공公을 설치하는 일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능한 인물을 써야 함을 말한 것이다.”⁵⁹⁾라고 했다. 최고 관료층의 경우 자리수에 연연하지 말고 현능한 인물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주대의 정치 체제를 담은 『주례』는 국정 전반을 천·지·춘·하·추·동의 6부로 분장하고, 각 부마다 예하의 분업화된 관직을 배치해놓고 있는데, 관직의 수가 모두 360여 개에 달한다.

이로써 본다면 경전에서 전하는 삼대의 통치 체제는 체계성과 전문성, 효율성과 간소함을 두루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응오티념이 주대 통치 체제의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고 있었

59) 『禮記』, 「文王世子」. “記曰, ‘虞夏商周有師保, 有疑丞, 設四輔及三公, 不必備, 唯其人.’ 語使能也.”

을 것으로도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그는 삼대의 정치 체제로부터 간소함을 특징적으로 읽어내어 부각시켰다. 현실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인식이 강하게 투영된 선택적 해석과 강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응오티념은 관료 조직의 간소함과 효율성이 ‘정政’의 폐단을 타개하기 위한 급무임을 지적했다.⁶⁰⁾ 변지의 쓸모없는 관원을 줄여서 민막을 해소하고, 남는 관원과 직무를 줄여서 관율官律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일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금의 상황에서 적절한 조정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도 했다. 관직 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왕의 제도를 조정하여 효용을 이끌어내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인 것이다.

이어서 그는 구체적인 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변방 지역 관료 조직의 실효적 재편이다. 그는 태원진 위쪽의 산림과 국경지대 민인에 대한 위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통화부 및 백통현 등 6개 현의 관리를 줄여서 백성의 부담을 덜게 하는 한편,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송사를 태원진의 진사鎭司에게 맡기자고 제언했다. 특수 지역의 관료를 재편하여, 민의 부담을 견감함과 함께 통치의 공백을 줄이자는 방안인 것이다.

둘째는 불필요한 행정의 간소화이다. 당시에는 향촌의 삼사三司가 처벌한 도형·유형에 있어, 해당 죄인들이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중앙으로부터 형과판科官이 파견되어 재조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오티념은 이를 과도한 절차라 지적하면서, 향후로는 형과의 재조사를 중단하기

60) 『吳時任全集』1권, 「金馬行餘」, 〈御史臺本堂官歲季陳言啓〉.

를 제안했다.

셋째는 장형의 폐지이다. 응오티념은 벌금형이 장형으로 바뀌었던 것에는 찬성하나, 지금은 과도한 장형으로 인해 형정이 번거로워지고 백성의 피해가 많아지는 등의 폐단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향촌에서는 현사가 시행하던 장형을 폐지하며, 중앙의 아문에서도 사건이 가벼울 경우 장형을 면하여 번거로운 소송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상의 세 가지 방안은 관료 체계의 본질적인 폐단에 손을 대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민 통치의 일선에서 많은 문제가 양산되던 지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응오티념 경세론 특유의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6. 결론

후래 왕조를 통해 확인되었듯 베트남의 전근대 역사에서 유학의 이념과 전장은 점차 그 저변을 넓혀 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때의 통치와 학술이 유학의 독존에 반대하고 유불도 삼교를 융합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⁶¹⁾ 단선적 발전 경로를 시각으로 해서는 해명하기 어려운 유학의 역할과 위상이 베트남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채로운 양상은 유학이 현실과 관계했던 다양한 부면과 논점들을 발굴하고, 또한 그에 대한 인식을 여러 지식인들의 사유를 통해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논증될 수 있겠다. 이에 본고는 그 일환으로서

61) 응우옌 타이 둥, 앞의 글, 2018, 123~125쪽.

18세기 후반의 격동기를 살았던 지식인의 삶과 사유 속에서 유학이 이해 및 활용되는 일면을 해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동시대의 지식인들 가운데 유자적 정체성이 강했다고 판단되는 응오티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응오티념은 유학에 조예가 깊었던 가학의 전통에서 성장하고 과거를 거쳐 관직에 진출했던, 당시의 대표적인 유학 지식인이자 관료였다. 그는 격동했던 베트남의 18세기를 관통하며 두 왕조에서 사환했고 주요한 자취를 남겼다. 특히 ‘교敎·법法·政政의 순행順行’이라는 표현에 온축된 그의 경세론은 정치 현안에 대해 분석적 비판과 적실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 면모를 분석한 본고는 이로써 드러나는 응오티념 경세론의 특징과 위상을 결론을 대신하여 제시한다.

첫째는 경세론의 토대로서의 유학이다. 경세의 요체를 ‘교·법·정의 순행’으로 상징한 응오티념은, 그 인군으로서의 사례를 이제삼왕에, 그 이상적 강령을 『서경』 「대우모」의 ‘구공九功’과 「홍범」의 ‘구주九疇’로 설정했다. 또한 ‘교·법·정’ 각각의 방안에 있어서도 순행에 부합했던 경전적 전거와 역사적 사례를 모델로 제시했다. 경세의 관점뿐만 아니라 그 방안에 있어서도 유학이 농도 짙게 배어있는 것이다.

둘째는 현실에 입각한 유학적 이상의 재해석 및 적용이다. 삼대의 통치 질서는 그 시대의 전장을 통해 실현되었으므로, 삼대의 이상성은 그 시대의 전장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더구나 삼대적 이상에 대한 강한 회구와 추종은 유학의 특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전에서 전하는 삼대의 전장은 모호한 경의와 불철저한 정보들로 인해 명징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후대의 유자들에게 탐구 및 재해석될 대상으로 남겨졌다. 유자들이 이상을 모두 동일하게 이해했을 것이라 간주하

거나, 혹은 그러한 면모들을 '복고復古'라며 간단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러한 양상은 응오티념에게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이제삼 왕의 은미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사실은 경제의 다대한 범주에 대한 안목과 고민,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로 비롯된 '교·법·정의 순행'의 결과물이었음을 지적했다. 태평성대의 군주가 '무위無爲'하지 않았음을, 나아가 오늘날의 군주와 국가 체제도 그러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가 강하게 투영된 해석인 것이다.

셋째는 체제성과 시의성이다. 응오티념의 경제론에서 포착된 교·법·정이라는 세 요소는 사실 국가의 주요한 골격이다. 또한 그가 지향하는 삼자의 순행은 각각이 긴밀하게 결합한 하나의 총체이다. 응오티념의 경제론이 국가 체제의 시각과 규모에서 논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고원한 목표를 정해두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새로운 무언가보다는 현실 제도의 난점을 조정하여 실효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에 걸맞게 현실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일례로 응우옌 왕조에서는 1802년에서 1858년에 이르기까지 토지 개간에 대한 조치를 46차례 시행했는데, 국가 주도의 개간과 참여도에 따른 향촌민에게의 관직 수여 등을 골자로 했다.⁶²⁾ 응오티념의 사후에 그의 제안과 유사한 방안이 시행되고 또한 실효를 거둔 것으로, 그만큼 응오티념의 비판과 대안이 시의성을 갖춘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응오티념의 경제론에 반영된 베트남 사회경제의 역사성이다. 관건으로는 현실적 요구를 투영한 이상의 재해석, 그리고 그러한 이상의 현실화 모색은 유학의 황혼기에 나타나는 경제학의 특징적

62) 송정남, 2001, 292~301쪽.

인 면모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학적 방법론을 공유하는 논자들이 모두 동일한 이상을 상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개인의 인식적 편차와 함께 그들이 속한 공간의 역사성도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응오티념의 경세론, 그중에서도 토지제도에 대한 입론에서 확인된다. 경세 목표로서의 ‘사민의 향산’은 현실에서 횡행하는 ‘사적 소유’와 끊임없이 대결했다. 그리고 유학적 재해석을 통해 양자의 접점을 모색했던 다양한 시도들은 18~19세기 동아시아 경세학이 발췌했던 주요한 성과를 이룬다. 그런데 이로써 제시된 방안들을 보면 다소간의 차이도 확인되는데, 농업 부분에서의 향산 마련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혹은 분명 도달해야 하지만 점진적이어야 한다거나, 혹은 농업 문제를 산업 제 분야에서의 전업 하에서 모색하는 등의 편차가 그러하다.

이에 비할 때 응오티념의 토지제도론은 국가 주도의 개간을 통한 농지 확충, 이를 활용한 농지 분급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여기에는 농업이 기간인 베트남의 산업 구조, 기왕에 균전제를 통해 농민의 향산을 마련해왔던 역사적 경험, 이를 실제로 수행해왔던 향촌에서의 관행과 질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된다. 즉 베트남의 사회경제가 지녀온 역사성이 응오티념 토지제도론의 주요한 골간을 이루었던 것이다.

18세기의 말이 중대한 기로였던 것은 비단 베트남뿐만 아닌 동아시아의 공통된 처지였다. 구체제의 모순들과 이로 인해 분출하는 요구들을 수렴해야 했고, 서양 문명과 그 배후에 도사리는 침략의 저의에 대응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의 과제는 결국 동아시아의 문명적 토양인 유학, 그리고 그것을 담지한 유학 지식인의 몫으로 던져져 있었다.

그리고 응오티념의 경제적 사유와 실천은 18세기 말의 유교 지식인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펼쳐냈던 경제론의 지형 가운데 하나의 주요한
지점 위에 자리하고 있다.

(논문투고일 2024년 10월 4일, 심사확정일 2024년 10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10월 18일)

참고문헌

원전

- 『大越史記全書』, 『歷朝憲章類誌』, 『黎朝詔令善政壹本』, 『大越通史』
『芝峯先生集』
『吳時任全集(Ngô Thi Nhậm toàn tập)』 1권~5권(2003, 社會科學出版社)

논문과 단행본

- 송정남, 『베트남 역사 읽기』, HUEBOOKs, 2010.
유인선, 『베트남의 역사: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산, 2018.
응우옌 타이 트, 김성범 역, 『베트남 사상사』, 소명출판, 2018.
김성범, 『베트남 사상으로의 초대』, 푸른사상, 2019.

김문식, 「지붕 이수광의 베트남 이해」, 『한국실학연구』 35, 2018.
김성범, 「베트남의 유학과 연구 현황」, 『오늘의 동양사상』 23, 2012.
김영죽, 「1790년, 安南 使臣의 중국 使行과 그 意味」, 『대동문화연구』 78, 2012.
김영죽, 「베트남 西山朝 巨儒 吳時任의 使行관련 기록 일고」, 『溫知論叢』 74, 2023.
武小爽, 「吳時任의 著述及思想研究」, 鄭州大學教 碩士學位論文, 2021.
박희병,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47, 2009.

배항섭, 「19세기 조선과 베트남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 토지소유를 둘러싼 제도와 관습의 차이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06, 2010.

송정남, 「15세기 후레 왕조의 사전의 발전과 규정」, 『동남아연구』 10, 2001.

송정남, 「베트남 北南朝의 科試 一考察」, 『동남아연구』 25-2, 2015.

송정남, 「베트남 당종의 政治와 科試 一考察」, 『동남아연구』 26-3, 2017.

송정남, 「베트남 당 응와이의 科試 一考察」, 『동남아연구』 27-2, 2017.

유인선, 「베트남 여조의 성립과 유교이념의 확립: 불교이념에서 유교이념으로」, 『동아연구』 48, 2005.

응우옌 파이 동, 「18세기 베트남의 경세제민 사상」, 『한국실학연구』 36, 2018.

陳彩玉, 「吳時任의 社會責任思想」, 『유학연구』 32, 2015.

최병욱, 「이수광의 베트남, 1597~1598」, 『동남아시아연구』 19-3, 2009.

국문요약

본고는 18세기 후반의 격동기를 살았던 베트남 지식인의 경제적 사유 속에서 유학이 이해 및 활용되는 일면을 해명하고자 했다. 그리고 동시대의 지식인들 가운데 유자적 정체성이 강했다고 판단되는 응오티념똌時任(Ngô Thì Nhậm, 1746~1803)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응오티념똌은 유학에 조예가 깊었던 가학의 전통에서 성장하고 과거를 거쳐 관직에 진출했던, 당시의 대표적인 유학 지식인이자 관료였다. 그는 격동했던 베트남의 18세기를 관통하며 두 왕조에서 사환했고 주요한 자취를 남겼다. 특히 그는 ‘敎敎·법法·政政의 순행順行’이라는 지향에 기초하고, 유학 인재의 양성과 선발(敎), 둔전 개간 등을 통한 민인의 안집(法), 간소하고 효율적인 통치 체제(法) 등을 방안으로 하여 구성된 경제론을 피력했다.

베트남을 비롯한 당시의 경제론 지형에서 본다면 응오티념똌의 경제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위상을 지닌다. 첫째, 유학의 경제론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에 기초하였다. 둘째, 현실에 입각하여 유학적 이상을 재해석하고 적용했다. 셋째, 경제의 시각과 범위가 국가 체제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그러면서도 시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경제 방안을 제시했다. 넷째, 그의 경제 인식과 방안에는 베트남이 문화적·지리적 환경 및 역사적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18세기의 말이 중대한 기로였던 것은 비단 베트남뿐만 아닌 동아시아의 공통된 처지였다. 구체제의 모순들과 이로 인해 분출하는 요구들

을 수렴해야 했고, 서양 문명과 그 배후에 도사리는 침략의 저의에 대응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의 과제는 결국 동아시아의 문명적 토양인 유학, 그리고 그것을 담지한 유학 지식인의 몫으로 던져져 있었다. 그리고 응오티념의 경제적 사유와 실천은 18세기 말의 유교 지식인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펼쳐냈던 경제론의 지형 가운데 하나의 주요한 지점 위에 자리하고 있다.

주제어 | 응오티념吳時任(Ngô Thi Nhậm), 베트남, 경제론, 政政·敎敎·法法의 순행順行, 유학, 과거제, 둔전 개간, 공전.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Ngô Thì Nhậm(吳時任)'s Theory of Governance as Viewed through 'Gyo(教)·Beop(法)·Jeong(政)'⁶³⁾

Yoon Suk-ho

Assistant Professor of Histor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clarify an aspect of how Confucianism was understood and utilized in the lives and thoughts of intellectuals who lived through the turbulent period of late 18th-century Vietnam. To this end, it focuses on Ngô Thì Nhậm (吳時任, 1746~1803), an intellectual of the time who is considered to have had a strong Confucian ide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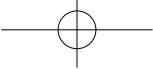
Ngô Thì Nhậm grew up in a family tradition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Confucianism, passed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科擧制), and entered government service. He was a prominent Confucian intellectual and bureaucrat of his time, serving two dynasties during the tumultuous 18th century of

63)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New Faculty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2022.

Vietnam, leaving significant contributions behind. In particular, he articulated a well-structured theory of governance, which was based on the ideal of ‘the harmonious implementation(順行) of Gyo(教)·Beop(法)·Jeong(政)’. This theory was composed of measures such as the cultivation and selection of Confucian talents[Gyo(教)], ensuring the stability of the common people through land reclamation and development[Beop(法)], and promoting a simple and 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Jeong(政)].

In the context of the governance theories of Vietnam and other regions at the time, Ngô Thì Nhậm’s theory of governance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features and significance: First, it was based on a broad and deep understanding of Confucian classics and governance theories. Second, it reinterpreted and applied Confucian ideals grounded in the realities of the time. Third, his vision and scope of governance were appropriate for a national system, while also considering timeliness and feasibility. Fourth, it reflected Vietnam’s historical experiences in its governance perspective and policies.

The late 18th century was a critical turning point not only for Vietnam but for East Asia as a whole. It was necessary to address the contradictions of the old regime and respond to the emerging demands while also confronting the imperialistic intentions of Western civilization. Furthermore, these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were ultimately placed on the shoulders of Confucianism, the civilizational foundation of East Asia, and the Confucian



intellectuals who upheld this tradition. In this regard, Ngô Thi Nhậm stands as a significant figure within the broader landscape of governance theories developed by Confucian intellectuals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navigating between reality and idealism.

Key Words | Ngô Thi Nhậm(吳時任), Vietnam, governance theory, Confucious, the harmonious implementation(順行) of Gyo(敎)·Beop(法)·Jeong(政), Confucianism,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科擧制), reclamation of Dunjeon(屯田), Gongjeon(公田).

